

테니스장 및 피클볼장 운영 재개 일반 점검표

최신 업데이트: (변경 사항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2021년 3월 2일:

- 모든 단체 스포츠에 적용되는 청소년 및 성인 레저 스포츠를 위한 DPH 프로토콜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 청소년 및 성인 레저 스포츠를 위한 DPH 프로토콜에 따라 단체 스포츠는 두 팀 간의 경기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그룹 수업은 모든 활동을 하는 동안 모든 참가자가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업 규모를 제한해야 하고, 수업 당 참가자 수는 여섯(6)명 이하여야 합니다.
- 직원은 문을 닫은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또는 식사나 음용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휴게실에는 제한 수용인원을 게시해야 하고 휴식 시간 동안 직원 사이에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가구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공중 보건국)은 사업체, 레저 활동 및 공공장소의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일반 대중, 사업체 경영주 및 지역사회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중 보건국은 모든 테니스장과 피클볼장 운영자들에게 근로자, 참가자 및 방문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테니스장이나 피클볼장의 직원과 이용자들에게 COVID-19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아래 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1) 직원과 고객의 건강 보호 및 지원
- (2) 적절한 신체적 거리 두기의 보장
- (3) 적절한 감염 관리의 보장
- (4) 일반 대중과 소통
- (5) 서비스의 공정한 이용 보장

위의 중요 사항은 아래 점검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테니스장 및 피클볼장 운영 재개 프로토콜 안에 구현해야 합니다.

참고: 팀, 리그, 클럽과 같은 단체 테니스 및 피클볼 활동과 관련된 청소년 및 성인 레저 스포츠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protocols/Reopening_SportsLeagues.pdf

본 지침에 적용되는 모든 테니스장과 피클볼장은 아래에 열거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되지 않은 조치가 왜 본인의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니스장/피클볼장 이름:

시설 주소:

A. 필수 제한 사항

- 시설에 도착하는 이용자/방문자에게 시설 실내 또는 실외에서는 항상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은 **안면 마스크 착용이 위험할 때**, 물속에 있을 때, 식사/음용할 때 또는 단독 신체 활동(예: 혼자서 조깅)을 할 때입니다. 이는 모든 성인과 만 2 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참가자가 호흡을 힘들어하면 운동을 잠시 쉬어야 하며, 마스크나 마스크에 습기가 차서 참가자의 얼굴에 달라붙어 호흡을 방해하면 교체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공기 흐름이 제한되는 마스크(예: N-95 마스크)는 운동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면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안면 마스크를 준비해 둡니다.
- 방문자들이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입장 증상 점검**을 시행합니다(LACDPH의 **증상 점검 지침참고**). 증상 점검은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이용자들이 현재 고립 또는 격리 프로토콜을 수행 중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이용자들에게 직접 시행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체크인 할 때 점검 또는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판**을 시설 입구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4 일 동안 COVID-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출입 및 참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지난 10 일 동안 COVID-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격리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직원, 선수, 강사 및 방문자는 가능한 한 a) 서로 **육(6) 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b) 심한 육체적 활동을 하는 동안 서로 8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복식 경기(한 팀당 2명의 선수)가 허용됩니다.
- 참가자는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기하고 있을 때도 포함).
- 참가자들에게 손을 자주 씻고 소독하기 위해 물과 손 소독제 또는 소독 물티슈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되었습니다.
- 이용자가 많은 날에는 최대 1 시간 동안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적절한 신체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 개인 교습이 허용됩니다. 학생과 강사 모두 안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코치는 참가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참가자 간의 신체적 거리를 가능한 최대로 넓히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 그룹 수업이나 훈련은 모든 활동을 하는 동안 모든 참가자가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업 규모를 제한하고, 한 코트에서 언제든지 수업 또는 훈련 당 참가자 수가 여섯(6) 명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강사와 모든 참가자는 수업이나 훈련 중에는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치는 참가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참가자 간의 신체적 거리를 가능한 최대로 넓히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 ❑ 팀 경기를 포함한 모든 단체 스포츠 활동은 [LACDPH의 청소년 및 성인 레저 스포츠 프로토콜](#)을 준수할 때만 허용됩니다. 팀 경기는 두 팀 사이의 경기로 정의됩니다. 팀이랑 경쟁 게임이나 스포츠에서 한 편을 구성하는 선수나 참가자 그룹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트랙과 필드, 단식 테니스와 같은 참가자가 개별로 경쟁하는 팀도 포함됩니다.
- ❑ 테니스와 피클볼은 야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 토너먼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음료병은 공유해서는 안 되며, 기타 개인 물품 및 장비는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 청소년 스포츠(만 18 세 이하) 연습과 경기에는 연령에 적합한 감독하에 관객이 허용되며 관객은 직계가족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관객은 혼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체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비가구원과 신체적 거리를 6 피트 정도 유지해야 하며,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문, 출입구 및/또는 게이트는 정상 운영 시간 동안 열어 두어야 합니다.
- ❑ 요금 지급은 온라인 및/또는 야외 창구나 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설에 직원이 배치된 경우:

- ❑ 모든 직원들은 아프거나 COVID-19 확진자에게 노출된 경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해당하는 경우 공중 보건국(DPH)의 자가 고립 및 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질병으로 집에 머물러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 휴가 정책이 검토되었고 수정되었습니다.
- ❑ 직원들이 집에 머무를 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자격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또는 고용주의 휴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안](#)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와 근로자 보상 혜택을 받을 권리, 그리고 [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에 따른 COVID-19 업무와 관련된 유급 병가와 COVID-19 근로자 보상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관해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 한 명 이상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사례)와 동일한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운영자는 해당 사례자를 자택에서 고립하게 하고, 시설에서 사례자에게 노출된 모든 직원이 즉시 자가 격리하게 하는 **계획** 또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추가 노출이 발생하면 COVID-19 관리 조치를 추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격리 대상 직원에게 진단 검사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프로토콜을 시설의 계획에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 ❑ 직원들이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LACDPH의 직원 증상 점검 지침](#)을 준수하여 **입장 증상 점검**을 매일 시행합니다. 증상 점검은 **발열이나 오한**,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그리고 직원이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 관련 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원격으로 하거나, 직원이 도착하는 즉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이용자들에게 직접 시행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체크인 할 때 점검 또는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판**을 시설 입구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체온을 점검합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4 일 동안 COVID-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출입 및 참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지난 10 일 동안 COVID-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격리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 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 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직장 내에서 14일 이내에 3건 이상의 확진자가 확인되는 경우, 고용주는 이 집단발병을 공중 보건국에 전화 (888) 397-3993 또는 (213) 240-7821, 또는 **온라인** www.redcap.link/covidreport로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되면 공중 보건국은 감염 관리 지침 및 권고, 기술적 지지 및 시설별 관리 조치를 포함한 집단발병 대응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국은 집단발병 조사를 위해 시설에 사례관리자를 배정하여 시설의 대응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직원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적절한 안전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직원은 근무 중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항상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전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전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전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직원은 문을 닫은 개인 사무실에서 혼자 일할 때 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항상 안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전 명령에서 예외 대상이었던 직원의 키를 넘는 단단한 칸막이가 설치된 큐비클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제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 직원들이 마스크를 일관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안전하게 벗을 수 있는 휴식 시간 외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항상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선호됩니다.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다른 직원들과 거리가 충분히 멀고 장벽이 있으면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 직원들이 식사 및/또는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공간 또는 구역은 수용인원을 감소시키고 직원들 간의 거리를 최대화합니다. 이는 다음을 통해 달성합니다:
 -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 개인들 간 최소 6피트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최대 수용인원 게시하기; 그리고
 - 식사 및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서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엇갈리게 배정하기; 그리고
 - 테이블을 6피트 간격으로 배치하기, 의자 사이에 6피트 간격 보장하기, 수용인원을 줄이기 위해 의자를 제거하거나 의자에 테이블로 사용 금지 표시하기, 얼굴을 마주하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의자 배치하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더욱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 사용이 권장되지만, 이를 수용인원 줄이기 및 신체적 거리 유지하기의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직원들은 매일 안전 **마스크**를 세탁 또는 교체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 직원들은 다음을 포함한 개인 예방 조치를 준수하라고 상기됩니다.
 - 아프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열이 사라졌으며 증상(예: 기침, 숨 가쁨)이 개선된 후, 즉 회복 후 최소 1일(24시간) 동안 그리고 증상이 시작된 후 최소 10일 동안 집에 머무르십시오.
 -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자주 손을 씻습니다. 물과 비누가 없으면 적어도 60% 알코올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식사 전, 화장실을 사용한 후, 기침과 재채기 후 손을 씻으십시오.

- 기침과 재채기 시 휴지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를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휴지가 없다면, (손이 아닌) 팔꿈치를 이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아픈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십시오.
- 전화기나 다른 기기와 같은 물건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기기를 공유해야 한다면 공유하기 전후에 소독 물티슈로 깨끗이 닦으십시오.
- 다른 직원과의 거리를 계속 주시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가까이에서 작업해야 하는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권장되는 최소 6피트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다른 작업자와 가까이 있거나 함께 작업할 때는 천으로 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작업대, 키보드, 전화기, 난간, 기기, 공유 기기, 문손잡이 등과 같이 자주 접촉하는 물건 및 표면은 수시로 소독해야 합니다. 업무 시간 동안 1시간 단위로 소독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 사본은 모든 직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B. 관리 프로토콜

- 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행사**는 금지되었습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매 시간 소독됩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 전후로 소독됩니다.
- 화장실은 매 시간 소독됩니다.
- 분수식 식수대에서는 물병을 채우는 것만 허용됩니다.

C. 프로토콜 모니터링

- 감염 관리, 신체적 거리 두기 및 안면 **마스크** 사용과 관련된 지침 및 정보 안내판을 시설 전체에 게시합니다.
- 시설 운영자는 매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용자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합니다.
- 이용자들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에서 떠날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추가 조치는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본 문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테니스장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마지막 개정일: